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구보

http://www.seo.incheon.kr/

| 선람 | 기관의장 | | 제1790호 2023. 10. 17.(화) |
|---|---|---|---|


## 차 례

### 고 시


○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8호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———— 1


### 공 고


○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1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———— 17



**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** **편집 : 홍보정책실 [032-560-4144]**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3-178호

#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광역시고시 제2011-207호(2011. 8. 16.)로 지정되고,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-349호(2017. 1. 2.),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-35호(2017. 3. 27.),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-173호(2021. 10. 05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(경미한 변경)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의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(032-560-4592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23. 10. 17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 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

### 1. 정비사업의 명칭(변경 없음)

○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### 2. 정비구역 및 면적(변경)

○ 정비구역 결정조서(변경)

| 구 분 | 정비사업의 구분 | 정비구역명 | 위 치 | 면 적(㎡) | |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기 정 | 변 경 | 변경후 | |
| 기 정 |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|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|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| 53,855.0 | 증 0.7 | 53,855.7 | |

※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
## 3. 정비계획(변경)

### 가. 용도지역·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
#### 1) 용도지역

○ 용도지역 결정조서

| 구 분 | | 면 적(㎡) | | | 구성비(%)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기 정 | 변 경 | 변경후 | | |
| 합 계 | | 53,855.7 | - | 53,855.7 | 100.0 | |
| 주거지역 | 제3종일반주거지역 | 53,855.7 | - | 53,855.7 | 100.0 | |

#### 2) 용도지구(해당사항없음)

###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(변경 없음)

#### 1) 교통시설(도로)

○ 도로 결정조서

| 구 분 | 규 모 | | | | 기 능 | 연 장 (m) | 기 점 | 종 점 | 사용 형태 | 주요 경과지 | 최초 결정일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등 급 | 류 별 | 번 호 | 폭 원 (m) | | | | | | | | |
| 기 정 | 중 로 | 3 | 122 | 12 (12~23) | 국지도로 | 901.9 | 대2-32 | 대2-35 | 일반도로 | | 1977.3.31 (인고제73호) | |
| 기 정 | 중 로 | 2 | 773 | 15 | 국지도로 | 197 | 중3-122 | 소3-101 | 일반도로 | | 2011.8.16. (인고제207호) | |
| 기 정 | 중 로 | 3 | 297 | 12 | 국지도로 | 76 | 중3-121 | 소2-3 | 일반도로 | | 2011.8.16. (인고제207호) | |
| 기 정 | 소 로 | 2 | 3 | 8 | 국지도로 | 250 | 중2-773 | 중3-297 | 일반도로 | | 2011.8.16. (인고제207호) | |
| 기 정 | 중 로 | 3 | 121 | 12 (12~21) | 집산도로 | 810 | 대2-35 | 중3-122 | 일반도로 | | 1996.8.6. (인고제139호) | |
| 기 정 | 소 로 | 3 | 17 | 6 (6~9) | 국지도로 | 187 | 중3-122 | 소1-2 | 일반도로 | | | |
| 기 정 | 소 로 | 1 | 3 | 10 (10~15) | 국지도로 | 181 | 중3-122 | 소1-2 | 일반도로 | | | |
| 기 정 | 소 로 | 3 | 23 | 6 | 국지도로 | 117 | 소1-3 | 소3-17 | 일반도로 | | | |

### 2) 교통시설(주차장)

○ 주차장 결정조서

| 구 분 | 도면표시 번호 | 시설명 | 시설의 세분 | 위 치 | 면 적(㎡) | | | 최초 결정일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기 정 | 변 경 | 변경후 | | |
| 기 정 | ① | 주차장 | 노외주차장 | 서구 가좌동 344번지 | 423.0 | - | 423.0 | 인고2011-207 11.8.16 | |

### 3) 공간시설(공원)

○ 공원 결정조서

| 구 분 | 도면표시 번호 | 시설명 | 시설의 세분 | 위 치 | 면 적(㎡) | | | 최초 결정일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기 정 | 변 경 | 변경후 | | |
| 기 정 | ⑫⑦ | 한신 공원 | 어린이공원 | 서구 가좌동 344 | 6,136.0 | - | 6,136.0 | 건고539 81.9.24 | |
| 기 정 | ① | - | 어린이공원 | 서구 가좌동 396 | 2,029.0 | - | 2,029.0 | 인고2011-207 11.8.16 | |

### 4) 공간시설(녹지)

○ 녹지 결정조서

| 구 분 | 도면표시 번호 | 시설명 | 시설의 세분 | 위 치 | 면 적(㎡) | | | 최초 결정일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기 정 | 변 경 | 변경후 | | |
| 기 정 | ① | 녹 지 | 완충녹지 | 서구 가좌동 380, 399 | 1,126.0 | - | 1,126.0 | 인고2011-207 11.8.16 | |
| 기 정 | ③ | 녹 지 | 완충녹지 | 서구 가좌동 305-5 | 79,439.0 | - | 79,439.0 | | 지구 외 |

## 다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변경)

○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

## 라.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
| 결정 구분 | 구역 구분 | | 위 치 | 정비개량계획(동) | | | |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명 칭 | 면 적(㎡) | | 합 계 | 존 치 | 개 수 | 철거후 신축 | 철거 이주 | |
| 기 정 |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| 53,855.7 |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| 41 | - | - | 41 | - | |

## 마.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결정<br>구분</th><th colspan="2">구역 구분</th><th colspan="2">획지 구분</th><th rowspan="2">위 치</th><th rowspan="2">주된용도</th><th rowspan="2">건폐율</th><th colspan="2">용적률</th><th rowspan="2">높 이</th></tr>
<tr><th>명 칭</th><th>면 적(㎡)</th><th>명 칭</th><th>면 적(㎡)</th><th>정비<br>계획</th><th>법적<br>상한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기정</td><td rowspan="3">가좌<br>라이프빌라<br>주택재건축<br>정비구역</td><td rowspan="3">53,855.7</td><td>획지44-1<br>(공동주택)</td><td>35,564.0</td><td>서구<br>가좌동<br>381번지<br>일원</td><td>아파트 및<br>부대복리시설</td><td>16.49%<br>이하</td><td>274.99%<br>이하</td><td>300%<br>이하</td><td>85m이하</td></tr>
<tr><td>획지44-2<br>(노유자시설)</td><td>1,300.0</td><td>서구<br>가좌동<br>396번지<br>일원</td><td>노유자시설<br>(아동관련<br>시설)</td><td>50%<br>이하</td><td colspan="2">150%<br>이하</td><td>15m이하<br>(3층이하)</td></tr>
<tr><td>획지45-2<br>(주차장)</td><td>423.0</td><td>서구<br>가좌동<br>344번지<br>일원</td><td>주차장</td><td>90%<br>이하</td><td colspan="2">1,500%<br>이하</td><td>-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건축물 용도</td><td colspan="2">구 분</td><td colspan="6">계 획 내 용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획지<br>44-1</td><td>지정용도</td><td colspan="6">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<br>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</td></tr>
<tr><td>불허용도</td><td colspan="6">• 지정용도 중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(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함)<br>•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획지<br>44-2</td><td>지정용도</td><td colspan="6">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</td></tr>
<tr><td>불허용도</td><td colspan="6">•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획지<br>45-2</td><td>지정용도</td><td colspan="6">•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</td></tr>
<tr><td>불허용도</td><td colspan="6">•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<br>•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</td></tr>
<tr><td>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</td><td colspan="9">•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% 이상을 85㎡이하로 건설</td></tr>
<tr><td>재건축<br>소형주택<br>건설에 관한<br>계획</td><td colspan="9">•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%를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함(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용적률 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)<br>•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비율의 30%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여야 함</td></tr>
<tr><td>건축물의<br>건축선에<br>관한 계획</td><td colspan="9">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위 치</th><th>계획내용</th><th>계획목표</th></tr><tr><td>건축한계선</td><td>획지44-1</td><td>• 인접대지경계선</td><td>폭6m 지정</td><td>•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공공보행통로</td><td colspan="9">• 대상지 내 기존 보행축을 고려하여 8m의 공공보행통로 계획</td></tr>
<tr><td>용적률<br>완화기준</td><td colspan="9">• 완화용적률 인센티브 적용<br>- 용적률 완화(인센티브) : 기준용적률 210% + 공공시설부지 제공 66.2% + 공공이용시설부지 확보 3.7% + 지하주차장 확보 10%<br>⇒ 완화적용 용적률 : 289.9%이하 → 계획용적률 : 274.99%이하<br>•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4조에 따라,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300%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<br>•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<table><tr><th>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</th><th>40% 이상</th><th>30% 이상 40% 미만</th><th>20% 이상 30% 미만</th></tr><tr><td>용적률 인센티브</td><td>10%</td><td>5%</td><td>3%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※ 획지 44-4, 44-5의 완충녹지 및 획지 44-3, 45-1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름

# 바.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
## 1) 환경보전계획

| 검토항목 | | 환경영향 | 대책 및 반영사항 |
|---|---|---|---|
| 자연환경 | 지형변동<br>절성토균형 | • 터파기 공사에 의한 토공량 발생 | •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미미<br>• 절·성토의 공사는 없으며 주변지역과의 단차가 없도록 계획함<br>• 주변도로 지반고를 고려한 계획으로 최대한 옹벽 발생이 없도록 계획유도 |
| | 녹지변동<br>녹지체계 | • 녹지율 증가 예상<br>• 녹지대 연결 필요 | • 녹지면적(공원 및 녹지)의 증가로 녹지율 증가<br>• 본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자연요소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녹지대를 고려함에 따라 도심지 녹지활용도 측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|
| | 비오톱 | • 비오톱유형 변화 없음<br>• 비오톱 공간증가 예상 | • 사업시행후 사업대상지의 비오톱 유형은 공동주택지(평가등급 5등급)으로 평가제외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비오톱 유형은 분포하지 않음<br>• 녹지면적 확보로 생물서식공간을 창출 |
| 생활환경 | 일 조 | • 본 건축물에 의한 일조의 영향 | • 획일적인 평행배치를 피하고 변화 있는 공간이 되도록 유도 |
| | 바 람 | • 바람길의 확보 | • 판상형의 거대건물이 아닌 신선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탑상형으로 건축할 계획 |
| | 에너지 | • 에너지소비증가예상 | •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절약형 단지조성 |
| | 휴식 및<br>여가공간 | • 환경친화적 건전한 공간 조성 | • 산책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Green Network체계 구축<br>• 보행연결통로를 구성할 수 있는 보행 Network체계 구축 |
|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| | • 폐기물의 발생, 공사장 소음발생 등 예상 | • 폐기물관리법, 건설 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|

## 2)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| 구 분 | 계획내용 |
|---|---|
| 재난방지 | • 개발전·후 비교시 녹지면적 등의 증가로 볼 때 개발전보다 불투수층이 감소하게 되어 개발로 인한 홍수유출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<br>• 개발전·후 토사유출량의 변화는 대동소이하나, 공사중에는 토공사 등에 따른 토사유출이 발생함에 따라, 최대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, 공사중에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임시저류지겸 침사지를 설치하여 활용<br>• 공사중·후에 단지내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확보<br>•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연구조 또는 불연 재료 사용<br>• 집중호우시 침수발생 피해지역으로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배제계획 수립하고, 포장재 사용시 투수성이 우수한 자재사용을 적극검토<br>• 교통사고 피해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|

## 사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
| 구 분 | 계획내용 | 비 고 |
|---|---|---|
| 공사시 소음·진동 | •「공사장 소음·진동 관리지침서」(2007.1 환경부)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<br>•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막 설치(북측 가정여중교 주변, 남측 유영아파트 변)<br>• 저소음,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·진동 저감 | |
| 일 조 | •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<br>• 인접한 가정여중 측 획지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일조 및 경관상 여건 향상 | |
| 통학로 | •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 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| |

## 아.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(변경)

| 결정 구분 | 도면 번호 | 가구 번호 | 면 적 (㎡) | 획 지 | | | | 비 고(용도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획지 번호 | 위 치 | 면 적(㎡) | | |
| 변 경 | 44-1 | 44 | 40,019.0 | 1 | 인천 서구 가좌동 381번지 일원 | 35,564.0 | |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|
| | 44-2 | | | 2 | 인천 서구 가좌동 396번지 일원 | 1,300.0 | | 노유자시설(아동관련시설) |
| | 44-3 | | | 3 | 인천 서구 가좌동 396번지 일원 | 2,029.0 | | 어린이공원 |
| | 44-4 | | | 4 | 인천 서구 가좌동 380번지 일원 | 기정 | 641.0 | 완충녹지 |
| | | | | | | 변경 | 641.4 | |
| | 44-5 | | | 5 | 인천 서구 가좌동 399번지 일원 | 기정 | 485.0 | 완충녹지 |
| | | | | | | 변경 | 484.6 | |
| | 45-1 | 45 | 6,559.0 | 1 | 인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| 6,136.0 | | 어린이공원 |
| | 45-2 | | | 2 | 인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| 423.0 | | 노외주차장 |

※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
## 자. 정비사업의 시행계획(변경 없음)

### 1)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

○ 구역(변경)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

### 2) 정비사업의 시행방법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

## 차.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(변경)

| 구 분 | 규 모 | | 비 고 | |
|---|---|---|---|---|
| 도 로 | 기 정 | 7,277.0㎡ | 8개노선 | |
| | 변 경 | 7,277.7㎡ | | |
| 주차장 | 423.0㎡ | | 1개소 | |
| 공 원 | 8,165.0㎡ | | 2개소 | 건립세대수×3㎡ 이상 또는 부지면적 5% 이상 중 큰 면적 |
| 녹 지 | 1,126.0㎡ | | 1개소 | |
| 상하수도 | 세대당 0.5ton 이상(609ton) 급수시설 설치 | |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5조, 수도법 및 하수법에 적법하게 설치계획 | |
| 소방용수시설 | 29ton 이상 설치 | | 화재안전기준(제4조)에 준용하여 적법하게 설치계획 | |
| 비상대피시설 | 피난안전구역 및 세대내 대피공간설치 | |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등의 기준 및 건축법 준용하여 적법하게 설치계획 | |
| 가스공급시설 | 적법하게 설치 | |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및 관계법령 준용하여 적법하게 가스공급시설 계획 | |

※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
## 카.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(해당사항없음)

## 타.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(변경 없음)

### 1)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수급계획

| 구 분 | 현황세대수(2011년 정비구역 지정 시) | | | 계획세대수 | |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계 | 가옥주 | 세입자 | 계 | 조합원 및 일반분양 | 재건축 소형주택 | |
| 세대수 | 702 | 278 | 424 | 1,218 | 1,178 | 40 | |

### 2)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

| 구 분 | 개발방식 | 면 적 | 건폐율 | 용적률 | 높 이 | 계획 세대수 | 진행현황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가좌진주 1차아파트구역 | 주택재건축 | 21,484.5㎡ | 21.86% | 299.52% | 지상 27층 | 714 세대 | 사업시행인가 | |
| 가좌주공 2단지 | 주택재건축 | 63,308.2㎡ | 19.74% | 249.95% | 지상 27층 | 1,757 세대 | 준공인가 (2017.12.11.) | |

## 파. 세입자 주거대책(변경 없음)

○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에 입주하는 세입자들에 대해 이주시기 및 철거 등에 대해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

## 하.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(변경 없음)

## 거.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(변경 없음)

○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(CPTED) 도입

-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
- 조경 식재 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
- 단지 내 놀이터,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시야 확보
- 밝은 조명,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
- 외부공간 및 지하주차장에 CCTV 설치

○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준수

## 너.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(변경 없음)

| 구 분 | 수 목 활 용 계 획 |
|---|---|
| 현황분석 | • 대상지는 80년대 중반 조성된 구도심에 해당하며, 주변지역 역시 도심지로서 환경부 법적 보호종 및 보호수 등은 조사되지 않았음<br>• 본 사업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별필지(연립주택지) 내 일부 조경부지를 제외하면 특별한 녹지는 존재하지 않음<br>• 건축물은 3층 이하의 연립 및 빌라지역으로 분포된 수목조사결과 주요수종으로는 은행나무, 스트로브 잣나무, 단풍나무, 왕벚나무, 단풍나무, 플라타너스 등 약 총 693주가 분포함<br>• 기타 수목으로는 장미넝쿨, 수수꽃다리, 쥐똥나무, 회양목 등이 있으며 그 식재수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|
| 향후계획 | • 향후 사업시행시 조사된 수목의 이식가치 및 생존률 등을 조사검토하여 대상지내 공원, 완충녹지, 가로수 등에 최대한 활용할 것임<br>• 활용 가능한 수목의 경우「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을 활용하여 이식 보존할 계획임<br>• 한신공원내 위치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추후 새로이 신설되는 어린이공원에 최대한 이식 보존할 계획임 |

## 더.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
## 러. 관련서류

○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.**(※ 첨부된 정비계획결정도(변경)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**

**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)**

○ 또한,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www.eum.go.kr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*< 지형도면고시도 : 변경 없음 >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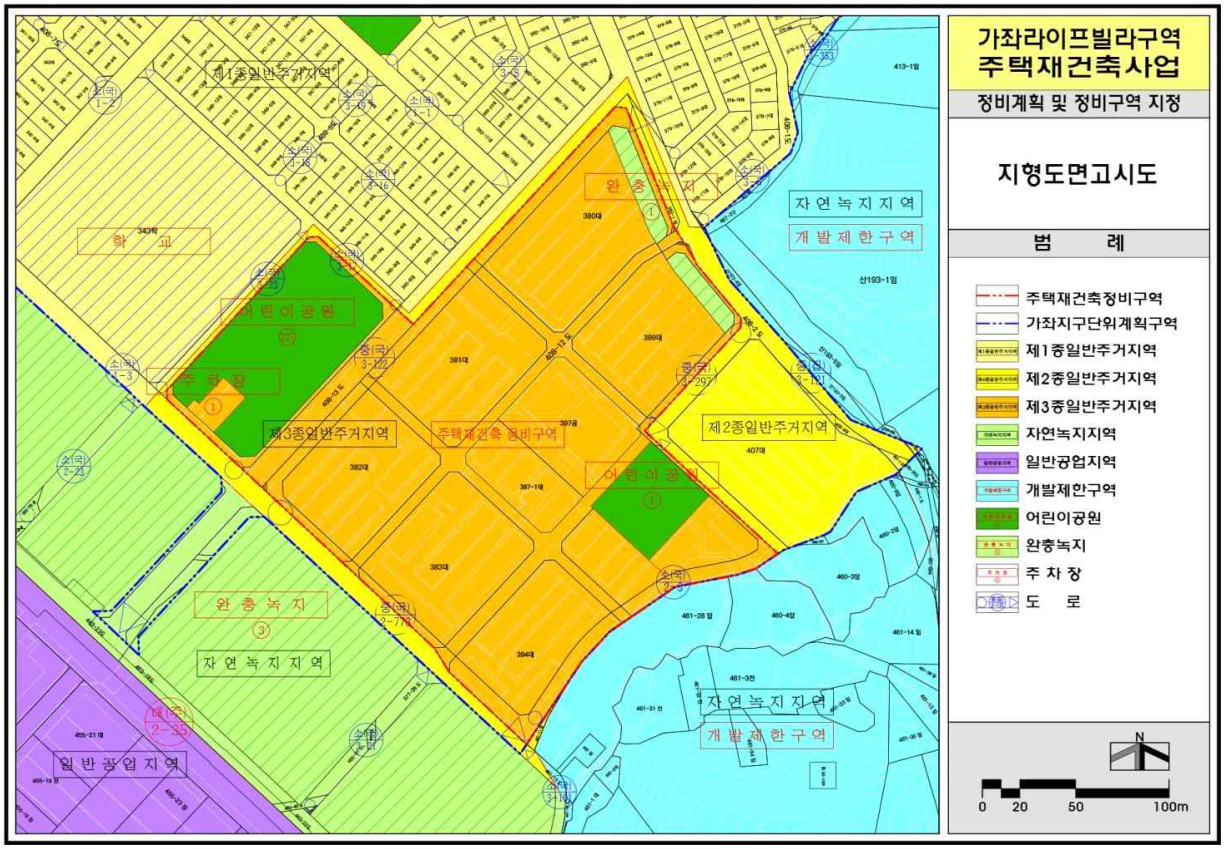

## < 정비구역 결정도 : 변경 없음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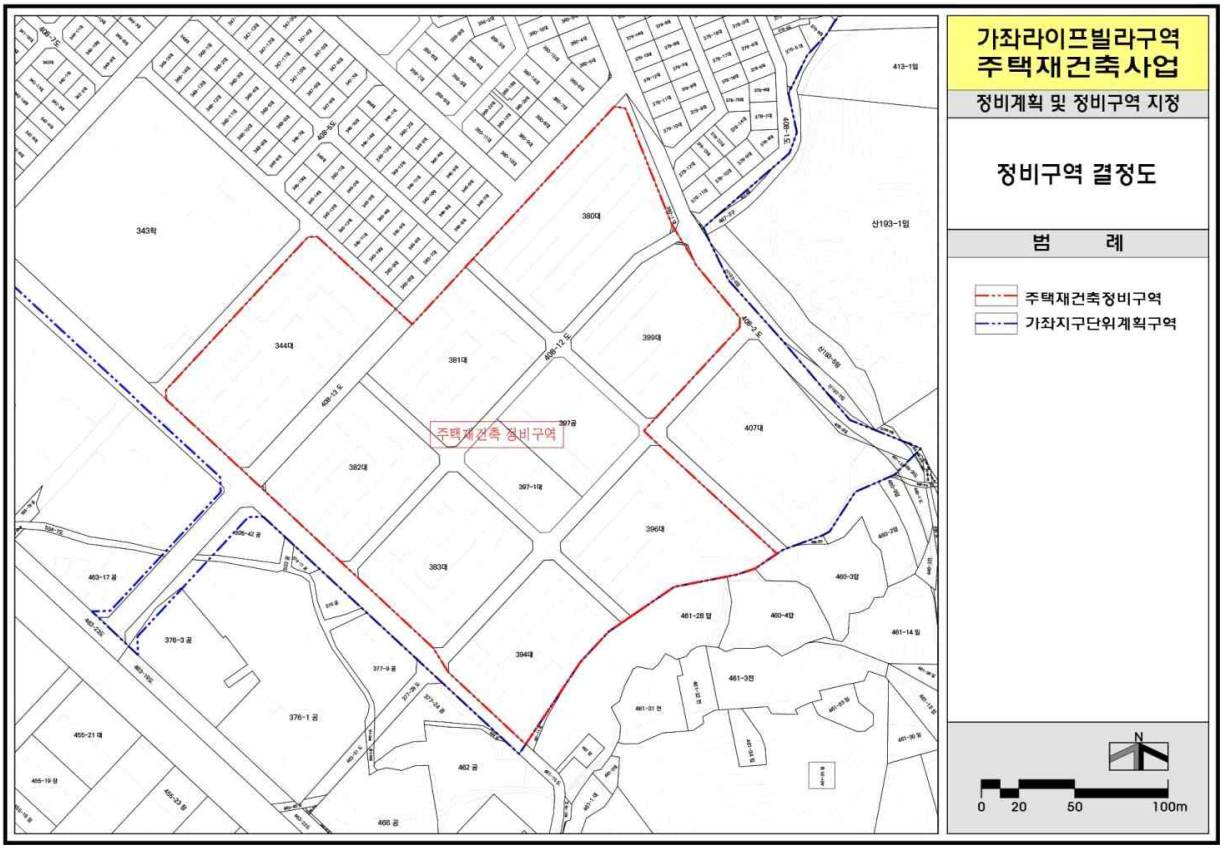

## < 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 : 변경 없음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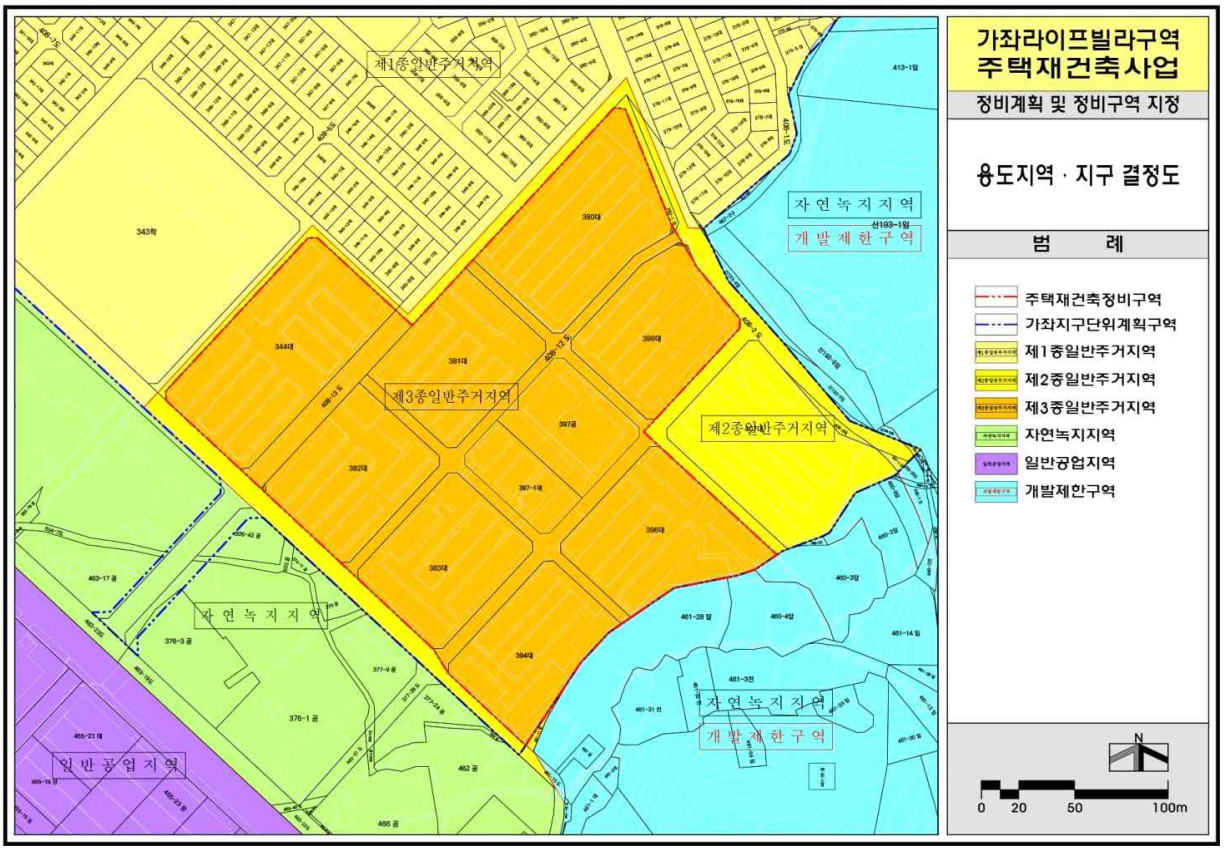

## <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: 변경 없음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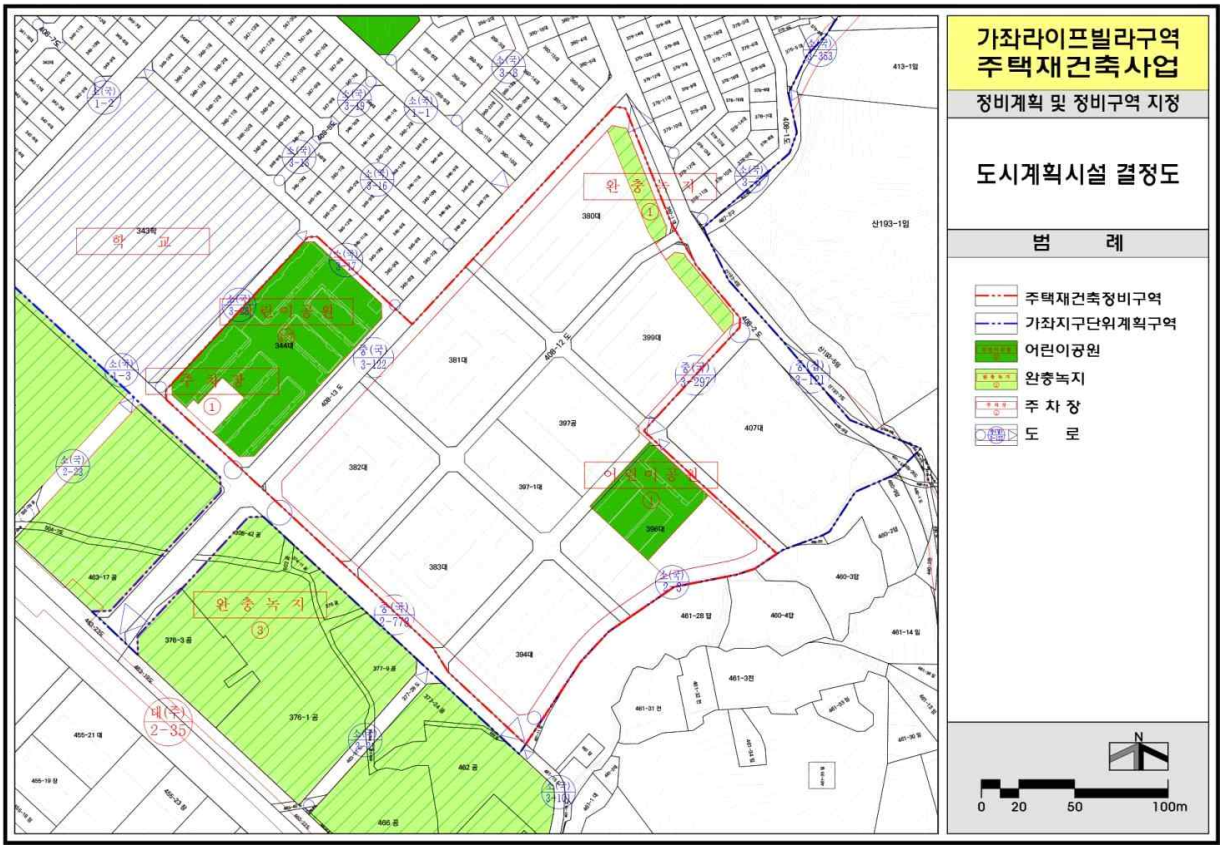

## <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: 변경 없음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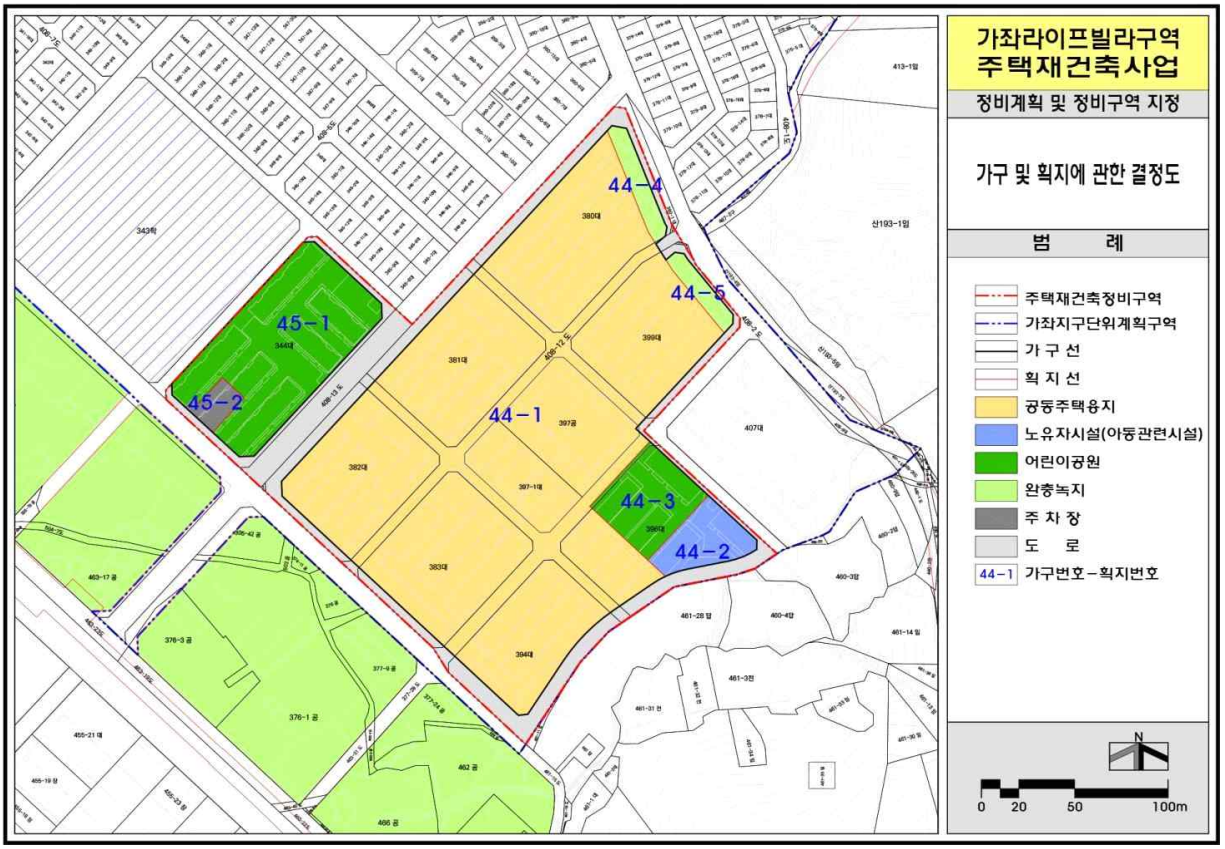

## <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: 변경 없음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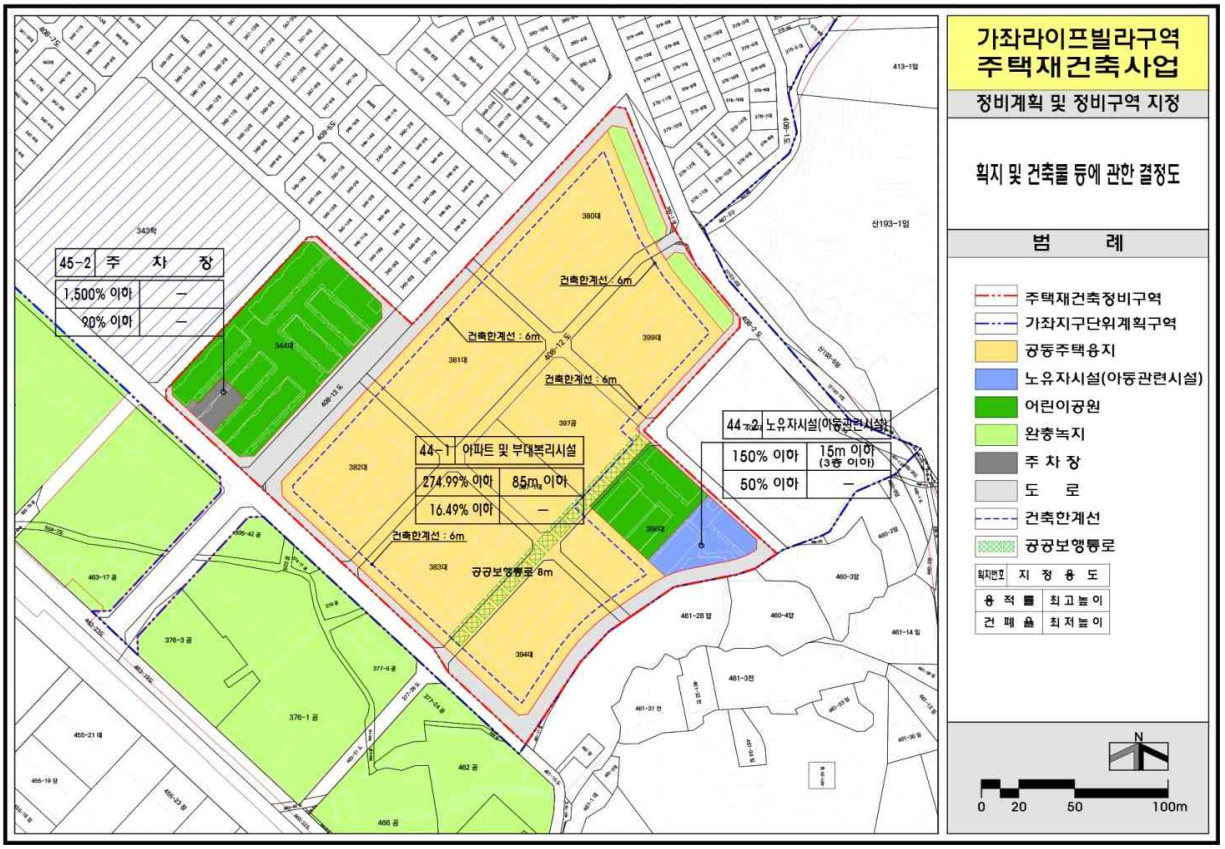

## < 정비계획 결정도 : 변경 없음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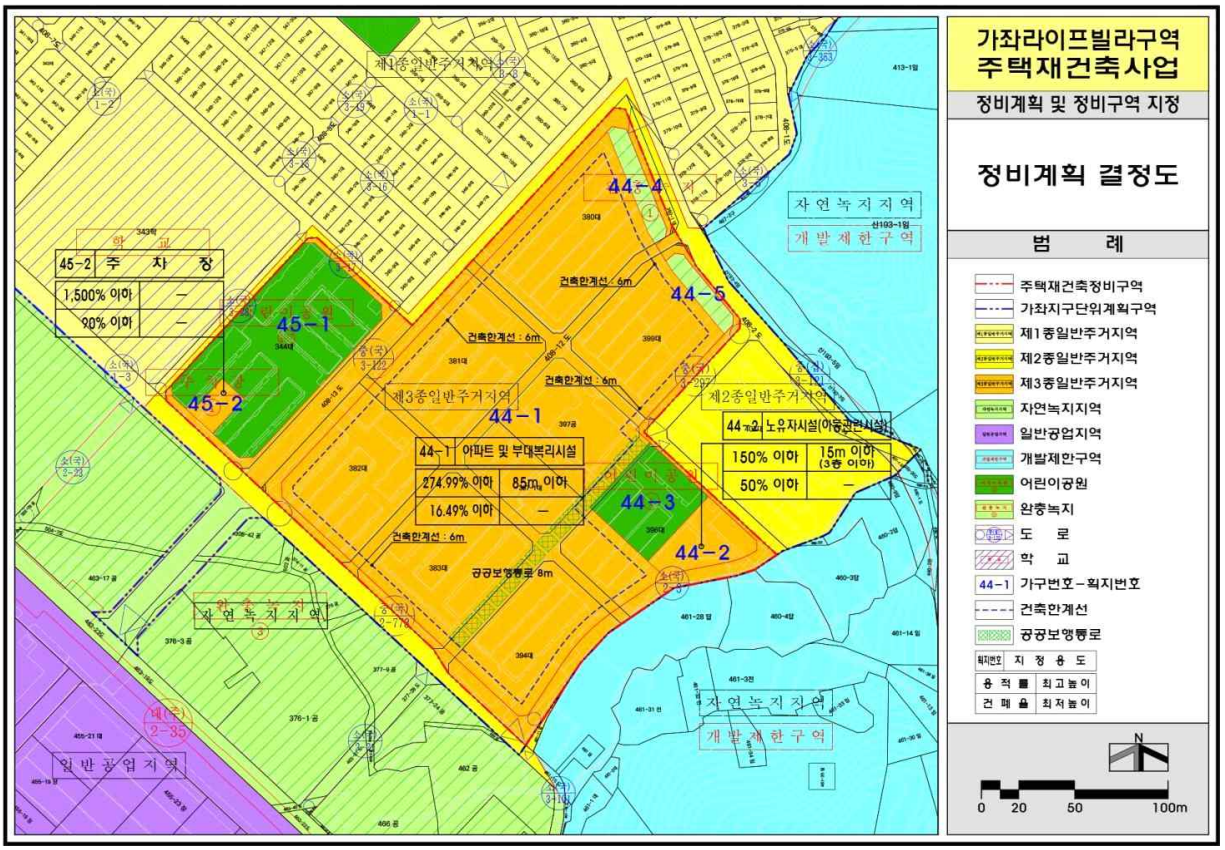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 - 2153호

#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

「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,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. 10. 16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 1. 자치법규명

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## 2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」(행정안전부) 기금운영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기금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,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사회복지사업 관련 내용 삭제

나. 사회복지기금의 집행범위 변경(안 제6조)
다. 자활기금 대상사업 정비(안 제16조)
라. 자활자금 운영사항 기 항목 삭제에 따른 동일 항목 삭제(안 제20조제6항)

## 4. 의견제출

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: 복지정책과, 전화 560-4291, 팩스 560-2738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○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## 5. 참고사항

○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#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」(행정안전부) 기금운영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기금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,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회복지사업 관련 내용 삭제

나. 사회복지기금의 집행범위 변경(안 제6조)

다. 자활기금 대상사업 정비(안 제16조)

라. 자활자금 운영사항 기 항목 삭제에 따른 동일 항목 삭제(안 제20조제6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: 감사실, 가정보육과와 합의

라. 기　　타: 해당사항 없음

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

#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”을 “노인복지사업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,”을 “노인복지사업 및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위하여 사회복지사업기금,”을 “위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운용수익금”을 “운용수익금과 출연금”으로 한다.

제7조 앞에 “제2장 사회복지사업”을 삭제한다.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6조제3호 중 “사업(기초생활보장 자활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)”을 “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임대 지원 사업

5.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

6.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과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「지방자치법」제159조 및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및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18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,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--- 노인복지사업 ----------. |
|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| 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-----. |
| 1. "사회복지사업"이란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. 다만, 노인복지사업은 제외한다. | <삭 제> |
| 2.・3. (생 략) | 2.・3. (현행과 같음) |
| 4. "장학금"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. | <삭 제> |
| 5. ~ 7. (생 략) | 5. ~ 7. (현행과 같음) |
| 제3조(기금의 설치) ① 인천광역시 서 | 제3조(기금의 설치) ① ---------- |

| | |
|---|---|
| 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,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| ---------- 노인복지사업 및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.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. | 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----- ----------. |
| 1. 사회복지사업 | <삭 제> |
| 2.·3. (생 략) | 2.·3. (현행과 같음)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기금, 노인복지사업기금, 자활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,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·운용한다. | 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------- ---------- 위하여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한다. | ③ ---------- 운용수익금과 출연금 --------. |
| ④ (생 략) | ④ (현행과 같음) |
| 제2장 사회복지사업 | <삭 제> |
| 제7조(대상사업)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| <삭 제> |

| | |
|---|---|
|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비용<br>2. 삭제<br>3. 삭제<br>4.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(조사, 연구, 상담, 세미나 등)<br>5.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사업<br>6. 삭제<br>7. 삭제 | |
| 제8조(지원대상)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전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br>1. 구민<br>2.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<br>3.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| <삭 제> |
| 제16조(대상사업)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·2. (생 략)<br>3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(기 | 제16조(대상사업) ----------<br>----------.<br>1.·2. (현행과 같음)<br>3. ----------<br>---------- 사업 |

| | |
|---|---|
| 초생활보장 자활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) | |
| <신 설> | 4.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임대 지원 사업 |
| <신 설> | 5.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|
| <신 설> | 6.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|
| 제20조(자활사업자금 운영) ① ~ ⑤ (생 략) | 제20조(자활사업자금 운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|

# 관계 법령 발췌

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·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, 2017. 7. 26.>

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
2.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3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17. 7. 26.>[전문개정 2011. 5. 30.]

# 의 견 제 출 서

| | | |
|---|---|---|
| 1. 자치법규명 | | |
| 2. | 성명(단체명/대표자) | |
| | 주 소 | |
| 3. 의 견 | | |
| 4. 기 타 | | |

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소

(전화 : )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

| | |
|---|---|
| 비고 |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<br>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<br>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
**※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**